

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9. 11.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9. 11. 22
- 다. 상 정 일 자 : '99. 11. 22

(제80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김 종 철
- 나. 개정사유

○ IMF 이후 급증하고 있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재직중인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가 읍면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을 승인함에 따라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별정직에서 제외코자 함.

- 다. 주요내용

- 별정직 임용범위의 변경(안 제2조 제3항)
 - 사회복지전문요원 → '삭제'
 - 가정복지담당 → 여성복지담당

3.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 조례안은 「사회복지 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계획」에 따라 별정직 임용범위를 개정키 위한 조례안으로써,
- 제2조 3항의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범위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삭제하고 화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의 개정을 전제로 개정한 바 있는 여성복지 담당은 별정직으로 존치하고자 하는 내용임.

-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상위관련 법규의 저촉이나 개정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'생략'

5. 토론요지

'생략'

6. 심사결과

'원안가결'

첨부 : 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8. 11.
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

- IMF 이후 급증하고 있는 복지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재직중인 별정직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정부가 음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 전환을 승인함에 따라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별정직에서 제외코자 함.
- 구조조정 계획의 변경에 따라 달라진 별정직 적용범위의 일부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별정직 임용 범위의 변경 (안 제2조 제3항)
 - 사회복지전문요원 → '삭제'
 - 가정복지담당 → 여성복지담당

3. 관련근거

- 사회복지전문요원 일반직 전환 계획
(전남자치 12110-2037, '99. 10. 7)

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3항 제4호를 삭제하고, 제7호를 "여성복지담당"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기재생략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①기재 생략 ②기재 생략 ③제1항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여성복지상담원 2. 아동복지지도원 3. 농기계교육교관 4. 사회복지전문요원 5. 보건진료원 6. 비서 7. 가정복지담당 8. 문화재관리요원 9. (삭제) 10. 의회전문위원 <p>제3조~제15조 기재 생략</p>	<p>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조(적용범위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제1항의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2. ----- 3. ----- 4. (삭 제) 5. ----- 6. ----- 7. 여성복지담당 8. ----- 9. ----- 10. ----- <p>제3조~제15조 (현행과 같음)</p>